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자치구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신청 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구 특성 기준 증빙 서류,
욕구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 ※ 서비스 대상 욕구 판단 서류 중 (1)-(6) 서류 참고

서비스 신청 방법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바우처이용권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금융카드 또는 전용카드)	본인, 부모, 후견인, 동주민센터 담당자 카드사(BC, 롯데, 삼성, 신한, 국민)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 제출 · 카드발급신청서(연령별 상이하므로 카드사 또는 동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이용자 선정 및 통지	해당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선정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 이용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및 제공기관 정보 안내
국민행복카드 수령	이용자,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즉시발급 또는 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희망 수령지로 발송 (2회이상 반송시, 관할 동주민센터로 발송)
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계약	이용자, 제공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제공기관 직접 선택 및 상담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초기상담기록지, 서비스제공계약서 등 작성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계좌이체 원칙이나 카드, 현금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종료	이용자, 제공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이용 시작 ·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 가능)

문의처 안내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에 문의해주세요.

- 국민행복카드 문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신고(전자바우처 콜린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02-6360-6799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024 서울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만 18세 이하의 정서, 행동, 사고, 언어, 인지 등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심리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본인이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 비용은 이용권(바우처)의 형태로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받고 일부를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란?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면서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

중 하나의 욕구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욕구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 서류((1)~(6)) 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1)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3)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5)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6)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장
 -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지원기간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1회(최대 2년) 가능

- 재판정 시에도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를 최초 서비스 신청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중복제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

서비스 시간 및 횟수

횟수: 주1회(월 4회) / 시간: 회당 50분

※ 부모상담은 필요시 실시 가능

사전·사후 검사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 행동 문제 진단 및 변화 측정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 심리상담 ●●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언어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함

●● 놀이심리(상담) 프로그램 ●●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함

●● 인지학습 프로그램 ●●

의식적 작용, 지각, 상상, 추론 등 지식을 구성하는 모든 의식적 과정을 포함하여 이에 대해 사고력과 정보처리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기능을 중점적으로 지도함

※ 외국어, 논술, 교과목 학습지도 등 학습활동 지원 불가

●●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 ●●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

●● 음악심리(상담) 프로그램 ●●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악기 이론 및 교습활동 지원 불가

●● 감각통합 프로그램 ●●

다양한 감각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 및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내적 욕구를 충분히 작동시키도록 이끔

●● 심리운동 프로그램 ●●

운동능력향상이나 신체적·정신적 결함 극복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물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상응하여 행동하는 능력을 돕는 전인적인 발달을 도움

※ 단, 심리운동 프로그램은 ①~⑦ 프로그램 중 3개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제공기관에 한하여 실시 가능(단순 체육활동, 운동지도 불가)